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21

2022년 2월 14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1일, 황인구 의원

2.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3.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2년 2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인구 의원)

1. 제안이유

○ 직업계고 취업률 및 진학률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저출생·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저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특성화고 취업 여건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전개함으로써 직업교육 강화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진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2.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6조).

3. 학습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4.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5.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6.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 1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021호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강화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직업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1]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한 예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표-1] 2021년 서울시교육청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총 70개교, 2021.3.1. 기준)

구분	특성화고	
	공업계	상업계
학교수	30	40
학교명	강서공고, 경기기계공고, 광운전자공고, 단국공고, 대진디자인고, 덕일전자공고, 리라아트고, 미래산업과학고, 상일미디어고, 서울공고, 서울디자인고, 서울디지텍고, 서울방송고, 서울방송고, 서울아이티고, 서울전자고, 성동공고, 성수공고, 세명컴퓨터고, 송파공업고, 신진과학기술고, 염광여자메디텍고, 영등포공고, 용산공고, 유한공고, 은평메디텍고, 인덕공고, 한강미디어고, 한세사이버보안고, 한양공고, 휘경공고	경기상고, 경기여상고, 경복비즈니스고, 고명경영고, 광산정보산업고, 대경상고, 대동세무고, 대일관광고, 덕수고, 동구마케팅고, 동명여자정보산업고, 동산정보산업고, 동일여상, 서서울생활과학고, 서울관광고, 서울금융고, 서울문화고, 서울여상고, 서울영상고, 서울컨벤션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서일국제경영고, 선린인터넷고, 선일이비즈니스고, 선정국제관광고, 성동글로벌경영고, 성암국제무역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송곡관광고, 신정여상, 영락유헬스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예림디자인고, 예일디자인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일신여상고, 정화여상고, 해성국제컨벤션고, 홍익디자인고, 화곡보건경영고

○ 이와 같은 직업계 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는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를 키우고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졸업생의 전문분야 취업과 심화 학습을 위한 진학 기회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직업계고의 취업률과 지원률은 대졸자에 비해 취약한 취업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2]하고 있으며,

---

1) 서울시내 마이스터고 :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로봇고, 수도전기공업고

2) 교육부 보도자료(2021.12.3.) -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신문(2021.12.23.) - 직업계고교 취업률을 높여야
한국경제(2021.11.23.) - 직업계고 취업률 급감, 미달사태 조짐…中企인력난 가중되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일 감소,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감소[3]되는 등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표-2] 2017~2021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현황

년도	학교수(교)	모집정원(명)	지원자(명)	지원율(%)	미달자현황 (학교수, 미달인원)
2017	74	16,714	22,862	137%	16교 546명
2018	74	16,792	19,630	117%	44교 2,079명
2019	74	16,122	18,571	115%	38교 1,709명
2020	74	14,846	17,084	115%	42교 1,509명
2021	74	13,436	13,242	99%	52교 2,097명

○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에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총 16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4]

○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개편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확보와 학생 교육 활동,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해 1개 학과(2학급)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5]하는 등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성화고와 마이스

3) 교육부,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직업계고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 : (’19) 65.14% → (’20) 60.46%

4) 교육부 보도자료(2021.8.9)
교육부-시도교육청, 코로나19에 따른 직업계고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한다
- 역량강화 지원과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에 총 162억 원 지원-

5)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1.11.14.) - 특성화고 학과재구조화 추진으로 신산업분야 진출 지원

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진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제3조에서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 총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9조까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및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안 제2조는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및 태도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로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6)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체는 직업교육을 위해 비용 부담 지원뿐만 아니라 실험·실습의 실시, 현장실습, 산학협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7]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와 협업하여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2조 및 제3조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중앙정부의 직업계고 지원 방침 기조에 발맞추어, 교육감으로 하여금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조례안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바,[8]

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7) 청와대(교육부) 국정과제 홈페이지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1-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교육부)-고졸 취업 활성화

8)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8월 11일, 11월 3일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동 사업이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능력·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취업 및 사회진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는바,[9] 동 조례안은 사전절차적 측면에서도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원방법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습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하면서 그 지원방식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학습지원금의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동 조례안과 유사한 사업을 도입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매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1년)까지 사전승인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꿈키움 카드(바우처카드)」로 취업지원금을 지급[10]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습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진로설계, 직무능력향상, 현장실습 및 취업준비라는 3단계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전라북도교육청 특성화고 취업 프로그램 1단계 이수 점수

---

9) 「서울시교육청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485), 2021년 11월 15일.

10) 전라북도 교육청 특성화고 꿈키움 성장지원 사업**(1년 단위 계속 사업)**
- 사업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취업준비금 지급』 2021 특성화고 꿈키움 성장지원
- 사업내용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1년) 까지 취업준비금 지급
- 사업구조 : 취업준비금은 「꿈키움 카드(바우처카드)」로 지급되며, 사전에 승인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순	구분	단계	영역	프로그램명	배정점수
1	지정	1단계	진로설계	1-1. 신입생 취업 준비	20점
2	지정	1단계	진로설계	1-2. 직업기초능력평가 자가진단	1점
3	자율	1단계	진로설계	1-3. 취업준비 교육	11점(10시간당 1점)
4	자율	1단계	진로설계	1-4. 기업탐방	3점
5	자율	1단계	진로설계	1-5.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점(2~10점)
6	자율	1단계	진로설계	1-6. 글로벌취업준비 (제2외국어능력향상)	5점(2~5점)
7	자율	1단계	진로설계	1-7. 진로 수첩	4점(1~2점)
8	자율	1단계	진로설계	1-8. 인적성검사	4점(1~4점)
9	자율	1단계	진로설계	1-9. 전공관련 주제 탐구 보고서	2점
				소 계	60점

○ 그러나 현재 동 사업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습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학교밖청소년 재정지원사업인 '친구랑' 과 같이 기본적인 수업이수를 기준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도 동 사업의 도입에 앞서 기본적인 수업이수 제한 기준 마련의 타당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학습지원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제로페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1]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

1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매년 학습지원금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지원 시기, 지원 방법, 교육 홍보, 재원조달 방안,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 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동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직업계고 재학생 37,299명(2021.3.1. 기준)에게 연간 1인당 100만원씩 학습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372억 9천 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1,864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12)]

[표-4]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급(안)

절 차	내 용
교육비 지원 안내 및 홍보	○ 신규 사업으로 설명회, 연수, 보도 자료, 가맹점 확보 등 사업 안내 ○ 제로페이(권장) 어플 신청 관련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한 혼선 방지
지원 대상자 신청 및 확정	○ 확정 절차 - (교육청)안내 ⇨ (직업계고)대상자 안내 신청 ⇨ (교육청)결과 수합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통보, (기준시점): 22년 2월말 ※ 전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지급 대상자 변동 시 추가조사를 통해 대상자 확정 ○ (기타)스마트폰 미소지자 지급방안: 현금(계좌이체) 지급 - 학생 선 지출 후 영수증 학교 제출, 내역 확인 후 스쿨 뱅킹으로 계좌이체(학기말, 교육청 교부 후 예산지원)
제로페이 어플 가입 및 상품권 수령	○ 학생(학부모): 제로페이 어플 가입 - 제로페이 지급대상: 만 14세 이상 ○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학생(학부모) 개인정보(PIN번호, ID 등) 생성, 스마트폰 제로페이 어플로 상품권 전송 ○ (학생, 학부모) **부여받은 PIN번호를 활용하여 제로페이 포인트(100만 포인트)**
포인트 사용	○ 사용기간: 2022. 3. ~ 2023. 2.(12개월) ※ 사용기간 경과 시 상품권 소멸 명시 ○ 사용방법: 제로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시 사용어플 QR코드 사용 - 결제 시 문자메시지로 사용 내역 통보(사용금액, 사용처, 잔여금액 등) - 사용금액이 잔여금액 초과 시 결제 불가 설정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체수입이 전체수입의 약 1%에 불과하여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수준이고,

12)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유사사업인 코로나19 교육회복지원 예산을 준용하고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전체 재학생(37,299명) 중 1개 학년(고3)의 80%를 대상(9,946명)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할 경우 연간 약 99억 4천 6백만원, 5년간 총 497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됨.

그동안 도입된 친환경무상급식, 고등학교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방과후돌봄, 교과서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이 전체 교육사업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13)]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새로운 교육복지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의 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서울시민으로서의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습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02, 2022.01.28.).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1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기준으로, 총 세입예산 10조 5,886억원 중 자체세입은 전체 예산의 1%인 1,120억원에 불과함. 또한 동 회계연도의 교육사업비 2조 2,622억원 중 교육복지비는 8,019억원으로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비가 35.4%를 차지하고 있음.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및 태도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이하 “학습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습지원금의 지원액, 지원시기, 지급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

2.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

3. 면접 기법,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참여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학습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습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학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서울특별시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주소지 전출,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학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 시기, 지원 방법

3.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4. 학습지원금 지원 관련 교육, 홍보

5.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精算),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還收) 방안

7. 그 밖에 학습지원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와 자치구, 산업체, 직업·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및 단위 학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